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4-5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8. 25.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1. 지원대상 : 5개 시·군·구 특별재난 선포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2. 지원기간 : '14. 9. 12. ~ '15. 2. 28.

3. 지원내용

가.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면제

- 타행환 송금수수료
- 통장재발행 수수료

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 유예기간 : '14. 9. 12. ~ '15. 2. 28.
-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 '15. 3월 ~ '15. 8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
-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4. 접수방법

가. 우체국보험 고객

- 재해증명서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보험계약자임을 확인한 후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를 접수

나. 구비서류

- 우체국예금 고객
 - 신분증 및 구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 우체국보험 고객
 -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
 - 신분증 및 구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붙임】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서

1.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자	상품명	보험료(대출이자)	최종 납입년월/횟수

2. 약정내용

제1조 2015년 3월 이후 해당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합니다.
제2조 2015년 2월까지의 납입 유예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는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

유예 보험료 (대출이자)납입 월	2015.3	2015.4	2015.5	2015.6	2015.7	2015.8
납입횟수/금액						

제3조(계약의 효력) 2015년 3월부터는 해당 월 보험료(대출이자)와 분할 납입으로 약정한 유예보험료를 상기 납입 월에 납입하며, 만약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를 약정한 납입 월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 월의 익월 1일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납입방법) 납입기일 까지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FC를 통해 납입하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우체국과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기의 각 조항을 확인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인)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피해내용			

OO 우체국장 귀하

접수자	직·성명	접수인	확인자	우체국장(인)